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19가단1524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6,996,682원 및 그 중 2,737,689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 17,894,556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4%, 21,751,053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은 25,4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1 내지 4, 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6. 9. 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12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5. 4. 3.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7. 11. 1.,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하여 대여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5. 12. 31. E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B의 채무는 6,686,986원 및 그 중 2,737,689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나. 피고 B은 2010. 5. 31.경 주식회사 F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그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15. 9. 8. G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G 주식회사는 2018. 6.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B의 채무는 38,022,473원 및 그 중 17,894,556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다. G 주식회사는 2015. 1. 26. 피고 B에게 24,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5.9%, 연체이자율 24%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8. 6. 27.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B의

채무는 42,287,223원 및 그 중 21,751,053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라. 피고 B은 2016. 9. 9.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12535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 H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M, N은행에 대하여 합계 298,708,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로부터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수익자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 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원물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4, 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9. 22. 접수 제12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부동산(가액배상)

가) 갑 제7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내지 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6. P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이 법원의 P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전 이 사건 5 내지 7 부동산에는 P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0,200,000원으로 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2017. 4. 4. 당시 이 사건 5 내지 7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6,4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5 내지 7 부동산에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25,430,000원(= 56,430,000원 - 선순위 피담보채무액 31,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2019. 9. 20.까지의 피보전채권액 86,996,682원(= 6,686,986원 + 38,022,473원 + 42,287,223원)과 위 25,430,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25,430,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5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25,43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2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미옥

부동산 목록

1. 전라북도 고창군 전 836㎡
2. 전라북도 고창군 대 919㎡
3. 전라북도 고창군 대 281㎡ 중 1/2 지분
4. 전라북도 고창군 대 278㎡
5. 전라북도 고창군 답 2555㎡
6. 전라북도 고창군 답 2249㎡
7. 전라북도 고창군 답 1225㎡
8. 전라북도 고창군 임야 1480㎡
9. 전라북도 고창군 임야 4264㎡
10. 전라북도 고창군 임야 1686㎡
11. 전라북도 고창군 전 132㎡
12. 전라북도 고창군 전 159㎡ 등.

1) 2020.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3의 나.항의 '2016. 6. 22.'은 '2016. 9. 22.'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